

■ 최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기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라.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기구 등 작업 시 유해·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안 제106조 및 별표 26)

-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57조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

- 1)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2)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안 제210조)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0. 1. 16. 및 2021. 1. 16.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보 정정내용](#)